

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년 9월 4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8월 22일, 엄셋별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8월 22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
제2차 행정재경위원회(2024년 9월 4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유지에 힘쓰고 알코올 오남용 등 음주 폐해 감소를 위한 조기 선별과 재활을 지원하여 주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음주청정지역 용어를 금주구역으로 수정하여 금주에 대한 경각심 제고(안 제2조, 제3조, 제10조)
- 알코올 의존 치료 및 재활 지원(안 제9조)
-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항 신설(안 제12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혼란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명확히 하고,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·이의신청 조항 신설하며, 금주구역 지정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
- 본 조례 제9조 신설은 부서간의 칸막이를 해소하고 금주 단속 과정에서 발견되는 알코올 의존자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, 나아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발의자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.
- 본 조례 제12조 과태료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4조 제3항 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2항 3의2에 의거 법령의 위임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을 따르는 것을 명시화 하고 있음.
- 본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